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36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0. 31.

다. 회 부 일 : 2025. 1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설>	○ 별표 2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명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재 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용 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 정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실태조사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지원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관 리	◦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안”이라 함)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랑상품권²⁾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법률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행·유통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운영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제정³⁾되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조성·용도·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후,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요구를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2025년 개정⁴⁾되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로 인해 발행 규모 증가 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다가 국회에서 재반영되는 과정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3) 법률 제17252호(2020. 5. 1. 제정, 2020. 7. 2. 시행)

4) 법률 제21030호(2025. 8. 26. 개정, 2026. 2. 27. 시행)

이 반복되는 등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구조는 재정여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공공적 가치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상 기금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재정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재원과 지출 간 연계성이 낮고,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미흡하며, 지출내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 신축적 사업추진 필요성이 낮은 등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의 기금신설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지원이 의무화되었으므로 현행 방식으로도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

여 「국가재정법」 제14조⁵⁾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기금의 재원 중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가 구매 과정에서 납부한 자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상품권운영자금 계정에서 보관·관리되는 자금임. 이를 정부가 설치하는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판매·환전·정산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자금으로서 기금이 수행할 목적사업과의

5)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연관성이 있어 보임.

다만,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⁶⁾는 상품권 판매금, 미사용금, 이자 등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 내 별도 계정에서 보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외의 주체에 의한 자금 보관·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판매금을 국가가 설치하는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경우 판매금의 관리주체와 귀속 구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현행 규정과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상 복권 판매를 통한 복권수익금은 광범위한 공익 목적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 규모, 할인율, 지원 방식 등이 상이하며, 지역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에 따라 사업 수요 변동폭이 매우 큰 특성이 있음. 특히 지역 경기 침체 시 집중적인 발행 지원이 요구되며, 특정 시기에는 단기간에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단년도 예산 구조만으로는 탄력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기금 방식은 다년도 재원 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 장기적·연속적 사업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도 적합하다는 점에서 신축적 사업 추진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설치하는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재정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7호, 이하 “복권법개정안”이라 함)은 복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연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 이하 “법정배분비율”이라 함) 중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의 기관·기금(이하 “법정배분기관”이라 함) 등에 배분하는 법정배분제도⁷⁾를 유지하고 있

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이 법정배분기관에 포함되어 법정배분비율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경우 사업추진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정배분비율의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복권법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동 법안의 심사결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면 종전의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되었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른 편차가 크고 국비 지원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중앙정부가 단일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경우 발행·정산·조사·효과분석 등 정책 기능을 전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초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 3. 2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지방자치체별로 설치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용도·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 신설 시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신 설＞	별표 2 72. 「 <u>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

문 의 처

02)6788-5150